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대 · 중 소 기 업 상 생 협 력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위탁 분쟁조정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일 공포, ‘23.9.29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3. 주요내용

- 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제11조, 제12조, 제13조) 삭제
- 나. 별점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안 별표3)
- 다. 교육명령에 관한 별점기준을 규정함(안 제18조의3)
- 라. 별점의 부과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별점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의2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전단 중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협의회”를 “법 제28조의5에 따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로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별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별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3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제2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에 따른 별점의 부과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별점기준: 2022년 1월 1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별점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 가. "별점"이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의 별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별점에서 제3호에 따른 별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 다. "누산점수"란 별점을 부과하려는 범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조치"라 한다)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 모든 별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과거 3년 간 모든 경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별점의 부과기준

- 가. 별점은 1)의 범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2)의 시정조치 유형별 별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별점만 반영하되, 2)의 라)에 해당하는 시정조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

위반유형	법 위반행위
가) 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 위반행위
나) 납품대금 조정 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법 제22조의2제7항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3항 위반행위
다)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22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6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라) 보복조치 금지위반	법 제25조제1항제1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4호 위반행위
마) 기술자료 관련 위반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
바)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5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7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1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위반행위

2) 시정조치 유형별 별점기준

시정조치 유형	별점
가)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2.0
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1.5
다) 법 제27조제2항 본문·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0
라) 법 제27조제3항·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표한 경우	3.1

나. 위탁기업이 과거 3년 간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후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에서 결정되는 별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별점을 부과한다.

다. 가목1)라)에 따른 위반유형에 해당하여 가목2)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점 5.1점을 부과한다.

라. 제3호가목4)에 따라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이하 "납품대금조정제도"라 한다)의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별점을 경감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점의 경감을 취소하고 이행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별점 5.1점을 부과한다.

3. 별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별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점
- 2)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점
- 3) 법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 가) 위탁기업의 대표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5점
 - 나) 수탁·위탁거래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이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25점
- 4)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의 도입·운영 계획을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본점수(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한다)와 추가점수를 합산한 점수

가) 기본점수

- (1) 수탁·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0.25점
- (2) 과거 3년 간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0.5점
- (3)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

나) 추가점수

- (1)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0.25점
 - (2)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0.5점
- 다) 가) 및 나)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실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상반영률(하나의 수탁기업이 둘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산정한다.

(1)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text{인상반영률} = \frac{\text{위탁기업이 인상한 금액}}{\text{수탁기업이 인상을 요구한 금액}} \times 100$$

(2)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text{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 = \left(\text{품목별 인상반영률} \times \frac{\text{품목별 납품물량}}{\text{조정을 신청한 전체 품목의 납품물량}} \right) \text{의 합계}$$

- 5)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자신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해당 사건 별점의 50%

(다만, 피해 유형이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로서, 조사 대상기업이 법 제40조에 따른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이자,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100%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별점 전부를 경감할 수 있다.)

나) 피해구제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해당 사건 별점의 25%

나. 가목에 따른 별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1조(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u>	<삭 제>
<u>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협회는</u> <u>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u> <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협의회의 위원은 위탁기업의</u> <u>대표, 수탁기업의 대표와 대기</u> <u>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u> <u>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u> <u>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u> <u>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u> <u>원 중에서 호선한다.</u>	<삭 제>
<u>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협회의</u> <u>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u> <u>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u>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u> <u>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u> <u>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u>	<삭 제>

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분쟁조정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사전조정을 거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7조(분쟁조정 요청) -----

----- 분쟁조정요청

서-----

-----.

<후단 삭제>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

----- 법

제28조의5에 따른 수·위탁분

쟁조정협의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1조,

<신 설>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별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별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별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3에 따른 누산점수가 4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u>점 이상인 경우</u>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2에 따른 별점의 부과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별점기준: 2022년 1월 1일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연 락 처	(044) 204 - 7798